

제공일자	2015. 8. 11(화)	담당자	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13, 010-2394-6630
			총 3매

제목 : 퇴직연금제도의 질적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절실

-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,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사각지대화, 실질적 수급권보호장치 취약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 미흡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,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『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』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고령화리뷰 2015년 제5호 테마진단).
-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3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7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적성장을 시현함.
 - 이 같은 성장은 퇴직급여제도가 이원화(법정퇴직금, 퇴직연금)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음.
 -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.
-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포괄성(퇴직연금가입 적용 범위), 지속가능성(재무건전성), 형평성(사업장 간 차별성) 등 질적 평가*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임.
 - 자영업자, 전업주부,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이 20% 수준에 불과하고, 영세사업장의 가입저조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함.
 - 또한, 연금세제혜택 미흡과 연금수령기준의 엄격(10년 이상 가입), 중간정산 등으로 연금수령비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저하됨.

- 특히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업 사업장에 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가입자교육(투자교육)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.

* 퇴직연금 질적 평가: 공적연금처럼 퇴직연금의 가입범위가 어떠한지(포괄성), 퇴직급부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어떠한지(보편성),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(지속가능성), 사업장 간의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(형평성)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.

□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질적성장(내실화)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됨.

□ 첫째,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*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,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대상폭의 확대가 요구됨.

- 중소기업금제의 넓고 얇은 지원(30인 이하 영세사업장)보다 짧고 두터운 지원(10인 이하 영세사업장)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지원 대상과 폭을 재검토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또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자영업자,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가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되, 실질 가입유도를 위한 인센티브(세제혜택부여 등) 확대가 요구됨.

*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(30인 이하 사업장)은 ① 저소득근로자(월소득 300만 원 이하)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%를,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%를 정부가 지원함.

□ 둘째, 근로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근속기간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, 장기적으로 미국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
- 또한 사전적 수급권보호 강화차원에서 보험료 적립기준을 최소 책임준비금의 70%에서 100%로 상향조정하고, 30%에 해당하는 미적립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- 이와 더불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근속년수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, 장기적으로 미·일 등 선진국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

장부분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.

□ 셋째, 영세사업장에 대한 투자교육(가입자교육)을 강화하고 이들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적용형 퇴직연금(디폴트 옵션 상품)*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캐시밸런스(Cash Balance)형 퇴직연금**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.

* 자동적용형 퇴직연금: 기업이나 근로자의 특별한 자산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, 자동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상품에 가입하는 퇴직연금

** 캐시밸런스(Cash Balance)형 퇴직연금: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결합한 퇴직연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골격은 유지하되, 투자운용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한 퇴직연금

□ 이와 더불어 노후소득보장강화(소득대체율 제고) 차원에서 라이프 사이클 상품 등 다양한 운용상품 개발, 그리고 운용수익률 비교공시의 강화, 장기 투자 유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<별첨> 테마진단“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”1부. 끝.